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2012. 12. 20 (목)

##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57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458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69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012.11.26	2012.11.26	2012.12.05	2012.12.05	최근 배의원
(2) 충주시 자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11.26	2012.11.26	2012.12.05	2012.12.05	종합민원실장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12.06	2012.12.06	2012.12.11	2012.12.11	기획감사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소중한 생명이 가족해체와 사회의 다원화,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생명이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갈수록 삶을 포기하는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 자살에 대한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대책 마련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안 제8조)
-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안 제9조)
- 자살지도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안 제11조)

##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 제정되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 변경, 조정금 산정,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사항 등 심의 · 의결
-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사회복지 전달체계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방침에 따라 정원을 늘리고 업무영역 축소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 대응하도록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286명 → 1,291명(5명 증)
  - 집행기관 : 1,267명 → 1,272명
    - 일반직 : 1,020명 → 1,046명(전환 21명, 사회복지 5명)
    - 기능직 : 201명 → 180명(△전환 21명)
    - 그밖에 : 46명
  - 의회사무국 : 19명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시차원의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음.
- 또한,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자살 예방사업수행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살예방직무 관련에 따른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는 등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며,
- 본 조례안은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법 제30조제8항에는 시·군·구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일선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사무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기능직 2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2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은 1,020명에서 1,046명으로 26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은 201명에서 180명으로 21명이 감축되어 총 정원은 1,286명에서 1,291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 답변 요지

###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질의 :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나 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

○답변 : 민간단체는 현재 정신보건센터에만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 : 자살 관련 상담이나 위기, 예방 홍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답변 :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재조사하여 지적 면적에 차이가 날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할 권한이 있는가?
- 답변 :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기능직 180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 답변 : 사무기능직은 내년에 전환시험을 통해 합격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일반직화 되게 돼 있음.

## **5. 심사결과**

- |                                  |        |
|----------------------------------|--------|
| (1)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 원안가결 |
| (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원안가결 |
|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